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2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장동혁 · 김예지 · 박덕흠

주진우 · 정희용 · 이달희

김장겸 • 서범수 • 성일종

최보윤 · 김도읍 · 인요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電源)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두어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개량하거나 해당 토지·건물 등을 취득하는 사업(이하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원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소가 운영·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전원개발사업이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소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

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원개발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을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발전사업 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사업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에게 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이주대책) ① 전원개발사	제10조(이주대책) ① <u>다음 각 호</u>		
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의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			
<u>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u> 자			
(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			
여야 한다.			
<u><신 설></u>	1. 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		
	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		
	<u>하게 되는 자</u>		
<u><신 설></u>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		
	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		
	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ㆍ		
	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